

예산총칙

제1조 2019년 사천지역자활센터 예산(안)은 다음과 같다.

제2조 사천지역자활센터의 2019년 세입.세출예산(안)은 각구역팔천육백오십삼만팔천원(986,538,000원)으로 한다.

제3조

1) 세입의 주요 재원은 다음과 같다.

①운영비 : 212,243천원 ②종사자수당 : 13,000원 ③자활근로사업비 : 690,000원 ④자산형성지원사업비 : 2,000천원
⑤자활활성화촉진사업비 : 23,950천원 ⑥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사업비 : 23,275천원 ⑦자활사업생산적일자리플랫폼 구축
사업비 : 15,000원 ⑧전년도이월 잡수입 : 2,300천원 ⑨비지정후원금 : 4,770천원

2) 세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인건비 : 219,800천원 ②업무추진비 : 800천원 ③운영비 : 13,713천원 ④사업비 : 752,225천원

제4조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로부터 교부된 보조금 및 비지정후원금, 지정후원금등은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이라도 보조 및 후원목적에 적절한 경우 먼저 집행할수 있으며, 이는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5조 세출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경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6조에 의거하여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.

제6조 기타 회계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예산과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연도 변경된 과목으로 승인된 것으로 하며, 그 외의 예산총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.회계규칙에 따라 집행한다.